

24. 地方稅法施行規則中改正令

內務部令 第668號 1995.12.30

지방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항중 “서울특별시와”와를 각각 “특별시와”로, “서울특별시장”을 “특별시장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세무공무원의 수납) 영 제9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이 지방세를 수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세 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이 없는 도시·오지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서 징수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

제26조중 “인구 50만 이상의시에”를 “인구 50만 이상의 시 및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에”로 한다.

제33조 제3항중 “결합의 보정요구는 문서로써 하고”를 “보정요구서는”으로 한다.

제33조의2 제1항중 “지방세제국장 및 지방세심의관은”을 “지방세제국장은”으로 한다.

제33조의3 제1항중 “과세시가표준액조정에”를 “시가표준액조정에”로 한다.

제33조의5 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취득물건 이전신고) ①영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물건을 이전하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한 취득물건 이전신고서를 그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물건의 이전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취득물건의 이전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제1항의 취득물건 이전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그 물건의 취득당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당해 물건의 이전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0조의5의 제목중 “부동산과세시가표준

액의”를 “부동산시가표준액의”로 하고, 동조 본문중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은”을 “건물 및 선박의 시가표준액은”으로 하며, 동조 제1호 및 제2호중 “과세시가표준액”을 각각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40조의6 제1항 및 제3항중 “과세시가표준액”을 각각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41조의 제목중 “과세시가표준액의”를 “시가표준액의”로 하고, 동조 본문중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42조 내지 제4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6조의 4 본문중 “영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제2목의”를 “영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나목의”로 하고, 동조 제3호 제1목 내지 제3목을 각각 가목 내지 다목으로 하며, 동호 나목(종전의 제2목)중 “제1목의”를 “가목의”로, “과세시가표준액에”를 “시가표준액에”로,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로 하며, 동조 제4호 제1목 내지 제4목을 각각 가목 내지 라목으로 하고, 동호나목(종전의 제2목)중 “제1목의”를 “가목의”로 한다.

제46조의8 제2항중 “매도(건축물을 신축하여 매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을 “매도할”로 한다.

제47조 제1항 전단 및 동조 제2항 본문중 “법 제112조 제3항 및 영 제84조의2 제2항의”를 각각 “법 제112조 제4항의”로 한

다.

제49조의2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4조의4중 “영 제79조의6의”를 “영 제84조의2 제1항 본문의”로, “부가가치세법에”를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로 한다.

제5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5조(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법 제13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대하여는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 제1항 전단 및 제2항 본문중 “법 제112조 제3항의”는 각각 “법 제138조 제3항의”로 본다.

제65조중 “별지 제49호서식과”를 “별지 제63호서식과”로 한다.

제70조 및 제78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0조(신고납부) 법 제17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할의 신고납부는 별지 제63호의2 서식에,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할의 신고납부는 별지 제63호의3서식에 의한다. 다만, 납세자가 원할 경우에는 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할 수 있다.

제78조의5(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초의 과세기준일은 공장용 건축물로 건축허

가를 받아 건축하였거나 기존의 공장용 건축물을 공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수한 경우에는 영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기타의 경우에는 공장시설의 설치를 착수한 날 이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재산세 과세기준일로 한다.

②법 제18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대하여는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 제1항 전단 및 제2항 본문중 “법 제112조 제3항의”는 각각 “법 제188조 제4항의”로 본다.

제78조의6을 삭제한다.

제78조의7중 “200제곱미터이상인 공장용 건축물을 말한다.”를 “200제곱미터이상인 것을 말한다.”로 하고, 동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당해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구역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식당·휴게실·목욕실·세탁장·의료실·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공여되는 시설과 대피소·무기고·탄약고 및 교육시설을 제외한다)의 연면적을 포함한다.

제81조 제1항 제2호중 “건설기계 및 선박과세대장은”을 “선박과세대장은”으로 한다.

제82조의2를 삭제한다.

제10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1조의2(기장의무가 없는 수입판매업자) 영 제180조 제2항 본문 단서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수입판매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사업개시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수입판매업자
2. 직전연도의 월평균 담배소비세 납부액이 15억원이하인 수입판매업자

제102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수입판매업자가 영 제18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4호의3 서식에 의한 담배소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별지 제94호의4 서식에 의한 시·군별 담배소비세액 내역을 제출함과 동시에 별지 제49호 서식에 의하여 시·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04조의9의 제목중 “건축물과세시가표준액의”를 “건축물시가표준액의”로 하고, 동조 본문중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04조의10 각호외의 부분중 “부대시설용건축물을 말한다.”를 “부대시설용건축물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3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의하여 공장 경계구역밖에 설치된 종업원의 주거용 건축물을 말한다.”로 하고, 단서를 삭제한다.

제104조의12중 “영 제194조의15 제1항 제3호의”를 “영 제194조의15 제1항 제2호 마목 및 동항 제3호의”로 한다.

제113조 다음에 제4절(제114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절 지역개발세

제114조(과세대상 기타용수의 범위) 영 제216조 제2호 다목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공업용수”라 함은 별표 3의 공장의 종류 제1호중 “155 음료제조업”에 사용되는 공업용수를 말한다.

제114조 다음에 “제5장 과세면제 및 경감”을 신설한다.

제115조 제3항 제2호중 “법 제111조 제2항 단서의”를 “법 제111조 제2항 각호의”로, “과세시가표준액에”를 “시가표준액에”로 한다.

[별표1]을 삭제한다.

별표 3 제24호중 “40101 발전업” 다음에 “4010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전기업(변전소 및 송·배전소에 한한다)”을 신설한다.

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49호서식·별지 제49호의2서식·별지 제53호서식 및 별지 제103호의2서식중 “영수증은 5년간 보관

하시기 바랍니다.”를 각각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라며,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 및 별지 제35호서식중 처리기간 “30일”을 각각 “60일”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의 제목 “취득물건 전출(입)신고서”를 “취득물건 이전신고서”로 하고, 동 서식중 “전출(입)을 신고합니다.”를 “이전을 신고합니다.”로 하며, “서울특별시(직할시)장”을 삭제한다.

[별지 제45호서식] 내지 [별지 제47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59호서식중 “⑥주면허”를 “⑥면허의 명칭”으로 하고, “⑦품목면허”를 “⑦규모”로 하며, (주)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규모란에는 인원·무게·수량·면적·재적·부피·동력·금액등 면허의 종별구분이 되는 수치 및 단위를 기입한다.

[별지 제63호서식]·[별지 제63호의2서식] 및 [별지 제63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2호서식]의 부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5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94호의4서식중 경상북도 칠곡군 다음에 예천군란을 신설한다.

부 칙

중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중전의 예에 의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지 서식 생략〉

◇개정이유◇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1995. 12. 6 법률 제4995호 및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됨에 따라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등 동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가. 세무공무원이 지방세를 직접 수납할 수 있는 경우를 지방세 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이 없는 도서·오지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등으로 정함(제7조의2).
- 나. 취득물건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한 경우 취득지 관할 시·군·구와 이전지 관할 시·군·구에 각각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이전지 관할 시·군·구에만 신고하도록 함(제40조).
- 다. 토지의 등급을 기초로 한 과세시가표준액 제도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토지등급의 설정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제42조 내지 제46조).
- 라. 담배소비세의 기장 의무가 없는 수입판매업자의 범위를 사업개시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직전연도의 월평균 담배소비세 납부액이 15억원이하인 자로 함(제101조의2).
- 마. 종합토지세를 과세함에 있어 공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의하여 공장경계구역밖에 설치된 종업원의 주거용 건축물도 공장구내의 사택과 같이 공장의 범위에 포함시킴(제104조의10).
- 바. 지역개발세가 과세되는 공업용수의 범위를 “음료제조업”에 사용되는 공업용수로 정함(제114조).
〈내무부 제공〉